


야생동물 전 과정 개선 관련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2025. 1. 23.(목)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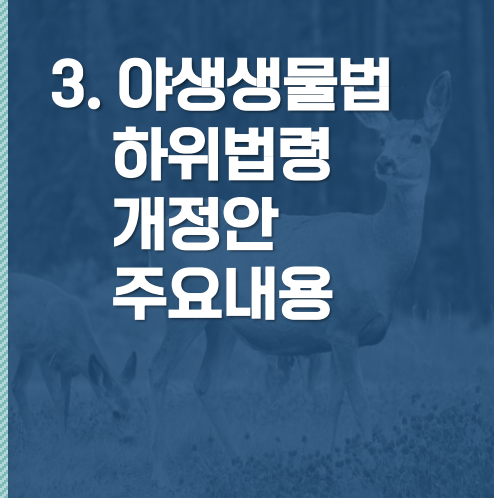
야생동물 전 과정 개선 관련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1. 야생생물법 개정 배경



2. 야생생물법 개정내용 (‘22.12.13 개정)



3.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4. 향후계획

CHAPTER

01

야생생물법 개정 배경



01. 야생생물법 개정 배경



**감염병
지속 발생**

메르스('15), 코로나19('20) 등
야생동물 유래 인수공통감염병에 따른
피해가 지속 발생하면서
야생동물 관리 강화의 필요성 강조



**야생동물
관심 증대**

파충류, 조류 등 야생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야생동물 영업
규모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측,
이에 대한 관리 필요성 증대



야생동물 질병 등의 예방, 국내 생태계 보호,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야생동물 수입·유통·영업 등 전 과정에 대한 제도 개선 ('22.12.13, 야생생물법 개정).



CHAP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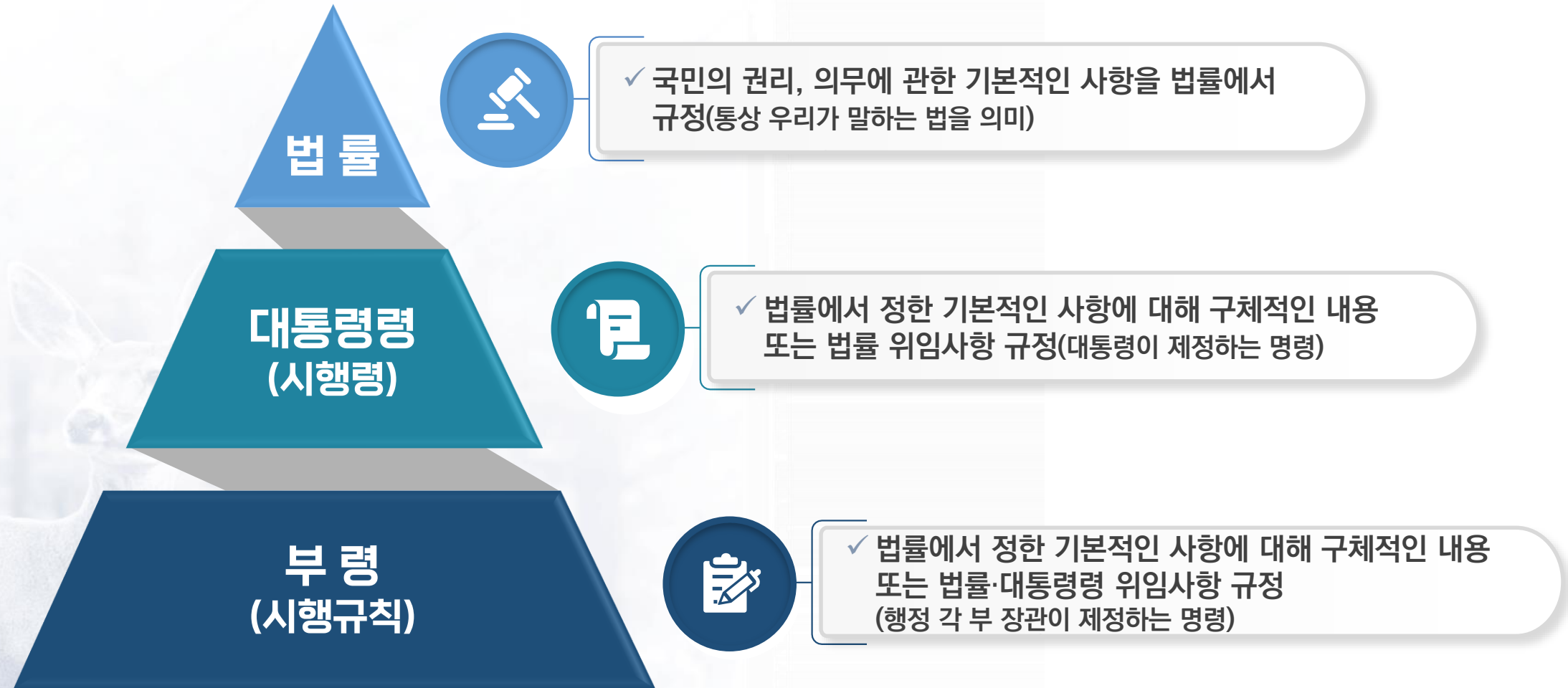
02

야생생물법 개정내용 ('22.12.13. 개정)



02. 야생생물법 개정내용('22.12.13. 개정)

○ 가. 법 체계 구성



02. 야생생물법 개정내용('22.12.13. 개정)

○ 나. 주요 내용

수입

- ☑ (제2조) 법정관리종* 이외 모든 야생동물(포·조·파·양)을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정의하여 **야생생물법상 관리대상에 포함**

* 국제적멸종위기종, 지자체허가종, 가축 등

- ☑ (제22조의2) 누구든지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 금지

- 다만, **백색목록, 연구·보호 등을 위해 지자체 허가를 받은 종은 수입 가능**

유통

- ☑ (제21조) **지자체 허가종**을 양도·양수·보관하려는 자는 지자체에 신고(폐사한 경우 포함), 식용 등 신고 필요성이 낮은 종은 **신고 제외**

- ☑ (제22조의4)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양도·양수·보관하려는 자는 지자체에 신고(폐사한 경우 포함), 식용 등 신고 필요성이 낮은 종은 **신고 제외**

영업

- ☑ (제22조의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야생동물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자체 허가 필요**

- ☑ (제22조의6~11) ^{22조6}영업 허가 결격사유, ^{22조7}영업 승계, ^{22조8}영업자 준수사항, ^{22조9}영업 허가 취소 등, ^{22조10}과징금 처분, ^{22조11}영업 점검

CHAPTER

03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03.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가. 백색목록



① 누구든지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반입할 수 없음. 다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백색목록)**의 경우에 제외

백색목록

- ✓ 안전성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분야별(분류·생태·산업·수의학) 전문가 논의를 거쳐 백색목록(안) 마련
 - ('25.1.23일 기준) 897종(♂8종, ♀16종, ♀664종, 양209종)

재검토

- ✓ 백색목록은 매년 검토하여 지정하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수시 검토 가능 (세부 사항은 고시로 위임)
- ✓ (고시) 백색목록 검토 기준(안전성, 환경영향), 주기 및 절차, 백색목록위원회(가칭) 구성·운영

03.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 나. 영업 허가 규모



법 제22조의5

① 국제적멸종위기종, 지정관리 야생동물 또는 제21조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중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취급하는 영업(판매·수입·생산·위탁관리업)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허가를 받아야 함

판매업·수입업·생산업

1. **20개체 이상**의 야생동물을 보유 및 사육하면서 판매를 하는 경우(파충류·양서류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50개체 이상**)
2. **월평균 10개체 이상**의 야생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파충류·양서류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월평균 20개체 이상**)

위탁관리업

1. 소유주의 위탁을 받아 **10개체 이상**의 야생동물을 일시적으로 영업장내에서 보호 또는 사육하는 경우

03.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 다. 영업 허가 기준



법 제22조의5

④ 허가의 기준·절차 및 영업의 내용·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함

공통 기준

1.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공동주택은 제외)일 경우 분리
2.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축사 관련 부속시설에서 야생동물(조류)를 사육하는 자는 영업장 운영 가능
3. 야생동물 습성 및 특징에 따라 채광 및 환기가 잘 되고, 온·습도 조절이 가능해야 함
4. 급수·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청소와 소독을 쉽게 할 수 있고, 야생동물들이 다칠 우려가 없는 재질이어야 함
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
6. 사육실, 격리실, 분만실 분리·설치, 개별 시설에서 분리하여 사육하는 경우는 제외

03.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 다. 영업 허가 기준



법 제22조의5

④ 허가의 기준·절차 및 영업의 내용·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함

판매업

1. 사육설비는 동물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여야 함
2. 사육설비는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어야 하며, 2단 이상 쌓는 경우 무너지지 않아야 함
3.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와 체온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함
4. (격리실) 전염성 질병이 다른 야생동물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별도로 분리되어야 하고, 야생동물에 대해 외부에서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다만,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03.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 다. 영업 허가 기준



법 제22조의5

④ 허가의 기준·절차 및 영업의 내용·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함

수입업

1.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따라 채광 및 환기가 잘 되어야 함
2. 야생동물의 배설물 청소와 소독이 쉬운 재질이어야 함
3. 사육설비는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함
4. (격리실) 판매업의 격리실에 관한 기준을 준용

03.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 다. 영업 허가 기준



법 제22조의5

④ 허가의 기준·절차 및 영업의 내용·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함

생산업

1.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따라 환기 등이 잘 되어야 함
2. 야생동물의 배설물 청소와 소독이 쉬운 재질이어야 하며, 2단 이상 쌓는 경우 무너지지 않아야 함
3. 사육설비는 야생동물이 쉽게 부술 수 없고, 야생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어야 함
4. (사육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 선반 및 은신처 설치 등 생태적 환경 조성, 사육설비 바닥은 망 X(조류제외)
5. (분만실) 새끼를 배거나 젖을 먹이는 야생동물은 분만실을 별도 구획
6. (격리실) 판매업의 격리실에 관한 기준을 준용

03.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 다. 영업 허가 기준



법 제22조의5

④ 허가의 기준·절차 및 영업의 내용·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함

위탁관리업

1. 위탁관리하는 야생동물을 위한 개별 휴식실이 있어야 하며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를 갖춰야 함
2. 동물병원과 같이 하는 경우 야생동물의 위탁관리실과 동물병원의 입원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함

03.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 라. 영업자 준수사항



법 제22조의8

영업자는 사육 및 공중보건 관리, 탈출로 인한 생태계 방지를 위한 시설 구축, 기록 작성·보관, 교육의 이수, 관리책임자 선임, 그 외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준수**

공통 준수사항

1. 영업장에 새로 들어온 야생동물에 대해서 체온 적정 여부, 기생충 및 피부병 존재 여부 등 건강상태 확인해야 함
2. 야생동물에 대해 개체관리카드 작성(CITES가 아닌 야생동물은 종별 작성 가능)하고, 개별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 표시
3. 판매업자, 수입업자, 생산업자는 거래내역서와 개체관리카드를 2년간 보관
4. 판매업자, 수입업자, 생산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처리계획서에 따라 야생동물 적절하게 처리하고 지자체 신고
5.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관리, 관리책임자 1명 선임, 교육 이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대여 금지 등
6. 영업자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03.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 라. 영업자 준수사항



법 제22조의8

영업자는 사육 및 공중보건 관리, 탈출로 인한 생태계 방지를 위한 시설 구축, 기록 작성·보관, 교육의 이수, 관리책임자 선임, 그 외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준수

판매업자

1. 야생동물을 실물로 보여주지 않고 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국외 수출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2. 야생동물을 판매 또는 전달을 하는 경우 직접 전달하거나 전문 운송업체를 통하여 전달
3. 스스로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상태의 야생동물을 판매해야 함
4.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보호자 확인서를 지참한 상태에서만 판매할 수 있음

03.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 라. 영업자 준수사항



법 제22조의8

영업자는 사육 및 공중보건 관리, 탈출로 인한 생태계 방지를 위한 시설 구축, 기록 작성·보관, 교육의 이수, 관리책임자 선임, 그 외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준수

수입업자

1. 야생동물 수입업자는 수입국과 수입일 등 검역과 관련된 서류 등을 수입일부터 2년 이상 보관
2. 야생동물 수입업자가 야생동물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야생동물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03.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 라. 영업자 준수사항



법 제22조의8

영업자는 사육 및 공중보건 관리, 탈출로 인한 생태계 방지를 위한 시설 구축, 기록 작성·보관, 교육의 이수, 관리책임자 선임, 그 외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준수

생산업자

1. 사육실 내 질병의 발생 및 확산에 주의
2. 개체관리카드에 출생일, 출산야생동물 수, 암수 구분 등 출산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관리
3. 야생동물 생산업자가 야생동물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야생동물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03.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 라. 영업자 준수사항



법 제22조의8

영업자는 사육 및 공중보건 관리, 탈출로 인한 생태계 방지를 위한 시설 구축, 기록 작성·보관, 교육의 이수, 관리책임자 선임, 그 외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준수**

위탁관리업자

1. 깨끗한 물과 사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사료나 간식 등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
2. 야생동물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
3. 건강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상 행동을 하는 경우 즉시 소유주에게 알려야 하며 병원 진료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4. 위탁관리하는 동안에는 관리자가 상주하거나 관리자가 해당 야생동물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03.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 마. 양도, 양수 등 신고



법 제21조

③지자체 허가종 양도·양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 신고, ④식용 등 신고 필요성이 낮은 종(고시)은 신고 제외



법 제22조4

②지정관리 야생동물 양도·양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 신고, ④식용 등 신고 필요성이 낮은 종(고시)은 신고 제외

신고 절차

- ☑ 양도·양수·보관·폐사가 발생한 시점부터 **7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함
- ☑ 양도, 양수의 경우에는 **입수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폐사의 경우에는 **폐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함

신고 제외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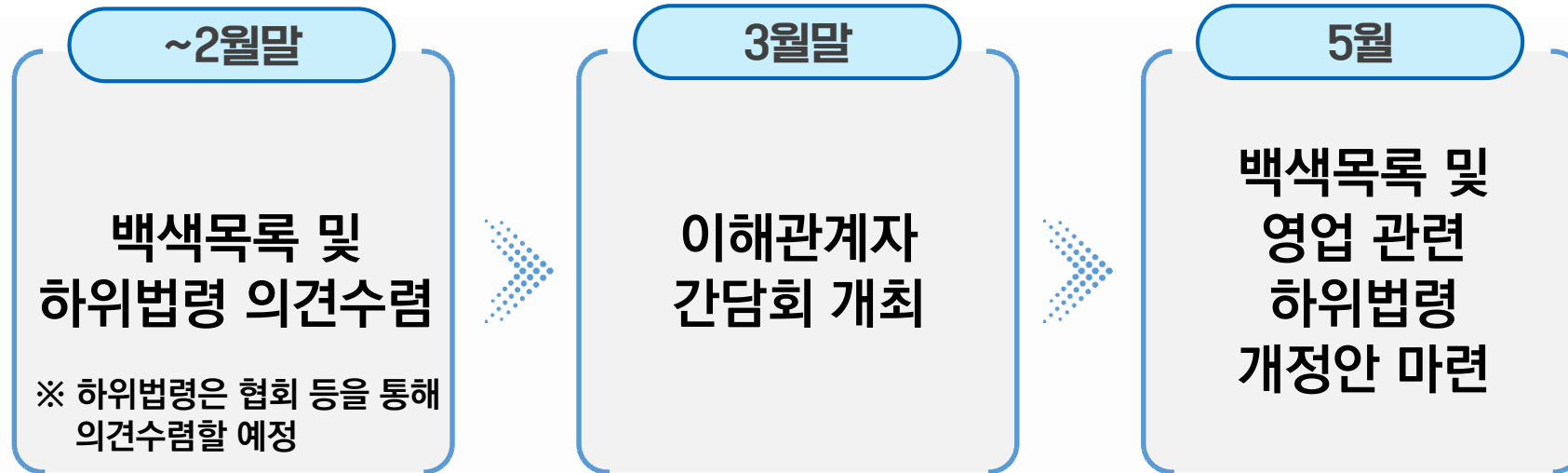
- ☑ 중국자라 등 **식용 목적의 경우에만 신고제외종 포함**

CHAPTER

04 향후계획



04. 향후 계획



야생동물 전 과정 개선 관련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감사합니다.

